
201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본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대교협 심의 결과나 본교 편제 개편 또는 정원 조정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확정, 공지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 04.

I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요약

모집 시기	원서 접수	정원 내외	전형명	전형방법	모집 인원
수시	9월	내	일반학생(학생부)	- 학생부 100%(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430
		내	kit인재	- 1단계 : 서류평가 100%(2배수) - 2단계 : 1단계성적 50% + 면접평가 50%(개별면접) <최저학력기준 폐지>	185
		내	창업및발명특기자	- 학생부 100%(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10
		내	국가보훈대상자	- 학생부 100%(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15
		내/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학생부 100%	40 (정원내 5명 포함)
		외	특수교육대상자	- 학생부 100%(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15
		내	기회균형할당제 I	- 학생부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11
		외	기회균형할당제 II	- 학생부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14
		외	농·어촌학생	- 학생부 100%(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48
		외	특성화고교출신자	- 학생부 100%	4
소 계					772
정시	12월	내	가군 일반전형	- 수능 100%	324
			나군 일반전형	- 수능 100%	227
		외	기회균형할당제(가/나군)	- 수능 100%	0
		외	농·어촌학생(가/나군)	- 수능 100%	0
		내/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나군)	- 학생부 100%	0
소 계					551
합 계					1,323명

※ 정시의 정원외전형은 수시모집 미충원 시 모집함.

□ 수시모집

○ 적성검사 폐지

2016학년도	
전형유형	모집인원(명)
일반학생 I(적성)	385

➡
(타전형으로
모집인원 배분)

2017학년도	
전형유형	모집인원(명)
일반학생(학생부)	205
kit인재	115
기회균형할당제 I	11
정시모집	54

○ 모집인원 확대

2016학년도	
전형유형	모집인원(명)
일반학생II(학생부)	225
kit인재	70
기회균형할당제	14

➡

2017학년도	
전형유형	모집인원(명)
일반학생(학생부)	430
kit인재	185
기회균형할당제 I,II	25

○ 전형명칭 변경

2016학년도	
전형유형	모집인원(명)
일반학생II(학생부)	225

➡

2017학년도	
전형유형	모집인원(명)
일반학생(학생부)	430

○ 최저학력기준 변경

전형유형	반영영역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
기회균형할당제 I,II	16등급	폐지	수능최저
kit인재전형	학생부 5.0등급	폐지	학생부최저

▶ 한국사 반영 : 6등급이내(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전형은 응시여부) 적용

○ 학생부 등급별 점수 변경

구분	석차등급별 점수								
	1	2	3	4	5	6	7	8	9
2016학년도	100	96	92	90	88	86	75	60	40
2017학년도	100	98	96	94	92	90	70	40	0

○ 전형별 전형요소 배점 변경

전형유형	단계	선발 비율	전형요소별 배점 및 비율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
일반학생(학생부) 국가보훈대상자 창업 및 발명특기자 기회균형할당제 I,II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일괄 선발	100%	-학생부 900점(90%) -출결성적 100점(10%)	-학생부 90점(90%) -출결성적 10점(10%)	
kit인재	1단계	200%	-학생부교과 420점(70%) -서류평가 180점(30%)	-서류평가 50점(100%)	서류 평가 확대
	2단계	100%	-1단계성적 600점(60%) -면접 400점(40%)	-1단계성적 50점(50%) -면접 50점(5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단계	150%	-학생부 500점(90%) -출결성적 100점(10%)	-학생부 90점(90%) -출결성적 10점(10%)	면접 폐지 (일괄 선발)
	2단계	100%	-1단계성적 600점(60%) -면접 400점(40%)	없음	

○ 지원자격 변경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배점 및 비율	
	2016학년도	2017학년도
kit인재	대구·경북지역 소재 일반계고교(종합고의 일반계 포함)에 입학하여 3학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교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정시모집

- 모집인원 확대 : 2016학년도 526명 → 2017학년도 551명
- 모집단위 및 모집군 변경 : 모집단위별 분할모집 폐지

학년도	모집군	모집단위	비고
2016	가군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부, 건축학부, 산업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화학소재융합공학부, 토목공학과, 광시스템공학과, 메디컬IT융합공학과	
	나군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응용수학과, 경영학과	
2017	가군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 산업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화학소재융합공학부,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부 분할모집 폐지
	나군	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광시스템공학과, 메디컬IT융합공학과, 응용수학과, 경영학과	

○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변경

전형유형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일반학생 기회균형할당제 농·어촌학생	학생부 11.8%+수능 89.1%	수능 10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단계별 선발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1단계 60%+면접 40%	일괄선발 학생부 100%

▶ 한국사 반영 : 등급별 가산점 부여(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제외)

III

2017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안)

(단위 : 명, %)

모 집 단 위	수시										정시						합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일반 학생 (학생부)	kit 인재	창업 및 발명 특기자	국가 보호 대상자	특수 교육 대상자	기회 균형 할당제		농·어촌 학생	특성 화고 출신자	특성 고 등을 졸업 한 재직자	소계	가군	나군	가/나군		나군		소계
						I	II							기회 균형 할당제	농·어촌 학생			
기계공학과	30	12	-	1	1	-	-	3	-	-	47	39	-	-	-	-	39	86
기계설계공학과	14	6	-	-	-	1	1	2	-	-	24	19	-	-	-	-	19	43
기계시스템공학과	44	18	1	1	1	1	1	5	-	-	72	60	-	-	-	-	60	132
전자공학부	71	31	1	2	2	2	2	8	1	-	120	-	99	-	-	-	99	219
건축학부	19	9	1	1	1	1	-	2	1	-	35	18	-	-	-	-	18	53
산업공학부	28	12	1	1	1	1	1	3	-	-	48	31	-	-	-	-	31	79
신소재공학부	40	17	1	1	1	1	1	5	-	-	67	58	-	-	-	-	58	125
화학소재융합공학부	56	24	1	1	1	2	2	7	-	-	94	79	-	-	-	-	79	173
토목공학과	17	8	-	1	1	-	1	2	-	-	30	20	-	-	-	-	20	50
컴퓨터공학과	37	15	1	1	1	1	1	4	1	-	62	-	45	-	-	-	45	107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22	9	1	1	1	1	-	2	1	-	38	-	25	-	-	-	25	63
광시스템공학과	12	6	1	1	1	-	1	1	-	-	23	-	12	-	-	-	12	35
메디컬IT융합공학과	12	5	1	1	1	-	1	1	-	-	22	-	17	-	-	-	17	39
IT융합학과	-	-	-	-	-	-	-	-	-	40	40	-	-	-	-	-	-	40
응용수학과	12	6	-	1	1	-	1	1	-	-	22	-	13	-	-	-	13	35
경영학과	16	7	-	1	1	-	1	2	-	-	28	-	16	-	-	-	16	44
소 계	430	185	10	15	15	11	14	48	4	40	772	324	227	0	0	0	551	1,323
수시/정시기준	55.7	24.0	1.3	1.9	1.9	1.4	1.8	6.2	0.5	5.2	100	58.8	41.2	-	-	-	100	-
전 체 기 준	32.5	14.0	0.8	1.1	1.1	0.8	1.1	3.6	0.3	3.0	58.4	24.4	17.2	-	-	-	41.6	100

-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조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기회균형할당제 I은 정원내, 기회균형할당제II는 정원외이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은 정원내 인원을 포함하고 있음.
- ※ 정시(가/나)군의 농·어촌학생, 기회균형할당제 및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은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모집함.
- ※ 2015학년도 이월인원 포함(산업공학부 +1명, 화학소재융합공학부 -1명, 컴퓨터공학과 +1명)

□ 지원자격

전형명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일반학생 (학생부)	학생부(교과) 위주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kit인재	학생부(종합) 위주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교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창업 및 발명특기자	학생부(교과) 위주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1. 발명 및 창업 경진대회 2. 전국과학전람회 3.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4.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5. 생산기반기술경기대회 6.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7. 산학협동산업기술대전
국가보훈 대상자	학생부(교과) 위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내외)	학생부(교과) 위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전형명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내외)	학생부(교과) 위주	<p>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 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p> <p>◦산업체 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 <p>◦학생자격 유지기준 :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2014년 2월 이후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p>						
기회균형 할당제 I(정원내) / 기회균형 할당제 II(정원외)	학생부(교과) 위주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차상위 계층)에 의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2. 보건복지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의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외)	학생부(교과) 위주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급~6급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농·어촌학생 (정원외)	학생부(교과) 위주	<p>◦농·어촌지역(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유형1>과 <유형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유형 1</td> <td>-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td> </tr> <tr> <td>유형 2</td> <td>-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 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1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유형 1	-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2	-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 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1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구분	지원자격							
유형 1	-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2	-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 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1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전형명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농·어촌학생 (정원외)	학생부(교과) 위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인 경우 본교에서 정한 “학생의 부모 적용 기준” 을 적용함 2.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 반드시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해야 함. 단,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함 3.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年數)만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중·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학교생활기록부의 입학일자 기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고교 유형은 고등학교 입학 시점 기준)
특성화고교 출신자 (정원외)	학생부(교과)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 졸업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이면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신고교의 학과가 본교 모집단위에서 지정하는 기준학과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특성화고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일반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기타 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성화학과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 ◦마이스터고 및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전형명	선발 모형	선발 비율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비 고
			학생부	서류 평가	면접 구술	수능 성적	합 계	
일반학생 (학생부)	일괄선발	100%	100 (100%)	-	-	최저 자격	100 (100%)	3개영역 합 13등급 이내
농·어촌학생	일괄선발	100%	100 (100%)	-	-	최저 자격	100 (100%)	3개영역 합 15등급 이내
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창업 및 발명특기자	일괄선발	100%	100 (100%)	-	-	최저 자격	100 (100%)	3개영역 합 16등급 이내

전형명	선발 모형	선발 비율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비 고
			학생부	서류 평가	면접 구술	수능 성적	합 계	
기회균형할당제 I,II	일괄선발	100%	100 (100%)	-	-	-		
kit인재	1단계	200%		50 (100%)	-	-	50 (100%)	
	2단계	100%		50 (50%)	50 (50%)	-	100 (100%)	
특성화고교출신자	일괄선발	100%	100 (100%)	-	-	-	100 (100%)	학생부 5.0 등급이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일괄선발	100%	100 (100%)	-	-	-	100 (100%)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점수산출활용지표

- 2008년 2월 이후 졸업자 : 석차 등급
-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 석차, 동석차, 재적수 등을 활용하여 석차등급 산출

○ 학년별 반영비율 : 1년(20%), 2년(40%), 3년(40%)

○ 요소별 반영비율 : 교과(90%), 출결(10%)

○ 반영과목 : 국어, 영어, 수학, 과학(단, 경영학과는 사회)

○ 학생부 대상 학년도

전형명	학년도	비고
모든 전형(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제외)	~ 2017학년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재직기간 적용

○ 학생부 등급간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70	40	0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

○ 반영영역 유형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공학 및 이학	반영	가/나	반영	과학/사회
경영학과	반영	가/나	반영	과학/사회

○ 전형유형별 최저학력기준

전형명	최저학력기준	비고
수능최저학력기준 공통반영	가. 공학 및 이학 :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1과목) 중 수학 영역을 포함한 3개 영역의 합 - 수학 “나” 형 응시자의 수학영역 등급은 +2 적용 나. 경영학과 : 수능 국어, 영어, 수학, 탐구영역(1과목) 중 영어 영역을 포함한 3개 영역의 합	탐구영역은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만 반영
일반학생(학생부)	- 공학 및 이학계열 : 13등급 이내 - 경영학과 : 13등급 이내	
농·어촌학생(정원외)	- 공학 및 자연계열 : 15등급 이내 - 경영학과 : 15등급 이내	
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창업 및 발명특기자	- 공학 및 이학계열 : 16등급 이내 - 경영학과 : 16등급 이내	창업 및 발명특기자는 경영학과 없음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	3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차등급이 5.0등급 이내인자	학생부 반영
kit인재 기회균형할당제 I (정원내) 기회균형할당제 II(정원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내외)	없음	

○ 한국사 최저학력기준 : 6등급 이내 추가 적용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전형 : 한국사 응시여부 적용

□ 면접고사

○ 수험생이 작성한 면접구술자료를 토대로 문항별로 종합적 평가

○ 면접구술위원 3인의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을 수험생의 득점으로 함

전형명	선발배수	면접구술점수			평가요소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kit인재	200%	50점	-	50점	기본 학업능력
					인성 및 성장가능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예절 및 발표력 등

□ 지원자격

모집군	전형명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가군 나군	일반학생	수능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나 군	기회균형 할당제	수능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보건복지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의 학생 					
	농·어촌 학생	수능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지역(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유형1>과 <유형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유형 1</td> <td>-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td> </tr> <tr> <td>유형 2</td> <td>-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1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인 경우 본교에서 정한 “학생의 부모 적용 기준” 을 적용함 2.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 반드시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해야 함. 단,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함 3.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年數)만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중·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학교생활기록부의 입학일자 기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고교 유형은 고등학교 입학 시점 기준) 	구분	지원자격	유형 1	-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2
구분	지원자격							
유형 1	-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2	-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1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모집군	전형명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나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학생부 (교과)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 ◦학생자격 유지기준 :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전형명	선발모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비율)			비 고
			학생부	수능성적	합 계	
가군/나군 일반학생 가군/나군 기회균형할당제 가군/나군 농·어촌학생	일괄선발	100%	-	100 (100%)	100 (100%)	
나군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00 (100%)	-	100 (100%)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만 해당

○ 점수산출활용지표

- 2008년 2월 이후 졸업자 : 석차 등급
-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 석차, 동석차, 재적수 등을 활용하여 석차등급 산출

○ 학년별 반영비율 : 1년(20%), 2년(40%), 3년(40%)

○ 요소별 반영비율 : 교과(90%), 출결(10%)

○ 반영과목 : 국어, 영어, 수학, 과학(단, 경영학과는 사회)

○ 학생부 대상 학년도

전형명	학년도	비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2017학년도	

○ 학생부 등급간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70	40	0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성적 활용지표 : 백분위

○ 반영영역 유형, 반영비율 및 가산점

모집계열	항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가산점
공학 및 이학	반영영역	반영	가/나	반영	사회/과학	수학 가형 15% 과학탐구 5%
	정시 반영비율	20%	30%	30%	20%	
경영학과	반영영역	반영	가/나	반영	사회/과학	없음
	정시 반영비율	30%	20%	30%	20%	

○ 한국사 반영

- 등급별 가산점 부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	0.9	0.8	0.7	0.6	0.5	0.4	0.3	0.2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제외

VI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학생부	수능	서류평가	면접	합계
수시	일반학생(학생부) 국가보훈대상자 창업및발명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기회균형할당제Ⅰ(정원내) 기회균형할당제Ⅱ(정원외)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 농·어촌학생(정원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내외)	100%	-	-	-	100%
	kit인재	-	-	50%	50%	100%
정시	일반학생 기회균형할당제(정원외) 농·어촌학생(정원외)	-	100%	-	-	10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내외)	100%	-	-	-	100%